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엄셋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9월 1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제6호)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 내용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제6호)
 -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 범위를 신설 규정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
 - 범죄예방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범죄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